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70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영 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8
□ 연령대별 파크골프 참여 비율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6. 2. 24.
3. 회 부 일: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 부족, 시설·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조의2(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파크골프(Park Golf)는 공원(Park)과 골프(Golf)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 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로, 일반 골프에 비해 배우기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위치적 접근성이 좋은 점 등으로 인해 최근 시니어 계층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¹⁾.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회원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수는 2021년 6.4만 명, 2022년 10.6만명, 2023년 14.2만명, 2024년 18.3만명, 2025년 22.9만 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 및 시설·운영비²⁾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파크골프장은 462개소³⁾에 불과한 실정임.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회원수	64,001	106,505	142,664	183,788	229,757

자료: 대한파크골프협회

1) 연령대별 파크골프 참여 비율은 [참고자료] 참조

2)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1코스(9홀) 조성 시 최소 8,250㎡(2,500평)의 부지가 필요하며, 약 9억원(9홀 조성시/부지매입비 제외)이 소요됨. 최근 27홀 및 36홀로 규모가 증가되는 추세임

3) 공공 파크골프장 기준

[파크골프장 현황]

(2024년 말 기준)

지역	개소수	비율(%)	지역	개소수	비율(%)
전국	462	100	경기	46	10.0
서울	23	5.0	강원	40	8.7
부산	17	3.7	충북	21	4.5
대구	34	7.4	충남	34	7.4
인천	4	0.9	전북	25	5.4
광주	10	2.2	전남	38	8.2
대전	4	0.9	경북	66	14.3
울산	8	1.7	경남	75	16.2
세종	7	1.5	제주	10	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노인의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6조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시설의 설

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파크골프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⁵⁾은 보조금 지급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제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⁶⁾의 일부인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체육시설(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타 체육시설 및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기획예산처는 파크골프장의 설치 및 운영은 2023년에 재원과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276. <u>체육진흥시설 지원</u>

6)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지방체육시설(체육관, 종목별 시설),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운동장생활체육시설(잔디, 우레탄트랙 조성 등), 레저스포츠시설(번지점프 등) 지원
- 지방이양: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에 포함되어 2023년도에 지방이양됨

함께 지방이양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해당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경우 재정규율과 맞지 않게 되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 연령대별 파크골프 참여 비율

* 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 연령 비율

(2025. 12. 31. 기준)

연령대(범위)	인원수(명)	비율(%)
0대 (0-9)	20	0.01
10대 (10-19)	21	0.01
20대 (20-29)	94	0.04
30대 (30-39)	360	0.16
40대 (40-49)	2,108	0.92
50대 (50-59)	27,002	11.75
60대 (60-69)	118,041	51.38
70대 (70-79)	74,448	32.4
80대 (80-89)	7,549	3.29
90대 (90-99)	114	0.05
100세 이상	0	0

자료: 대한파크골프협회